

##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7일

### 강릉시장

#### 1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의견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#### 2. 공고방법 : 강릉시청 홈페이지(www.gn.go.kr)

#### 3. 공고기간: 2024년 5월 17일~6월 5일(20일간)

#### 4. 행정예고 내용

- 가. 내 용: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
- 나. 운영목적: 몰수마약류 보관창고에 CCTV 설치로 보관물품 안전 유지 및 범죄 예방
- 다. 설치장소: 1개소/ 1대

| 연 번 | 설치 예정 장소                | 설치대수 | 촬영시간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합계 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| 1    |      |     |
| 1  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 | 1    | 24시간 | 신규  |

라. 문 의 처: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(☎033-660-3102)

## 5. 의견제출(별표 서식)

가. 제출기한: 2024. 6. 5.(수)

나.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기관: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(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), 팩스: 033-660-3037

라. 제출방법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

※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별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[별표]

|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|  |
|---|--|--|------|--|
| 행정예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   |  |      |  |
| 의견 제출자  | 성명<br>(개인/단체)  |  | 생년월일 |  |
|   | 주소   |  |      |  |
|   | 연락처  |  |      |  |
| 의견  | ○ 설치예정위치 :<br><br>○ 의견제출 내용  |  |      |  |
| 기타  |  |  |      |  |
| 물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    |  |  |      |  |
| 2024년     월 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|  |
| 제출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|  |  |      |  |
| <b>강릉시장 귀하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|  |
| 비고 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br>3.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 |      |  |